

계속적 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 및 일방적 계약 해지 여부 - 온라인게임 영상물 및 캐릭

터 라이선스사업계약 후 라이선시의 사용료 미지급 및 정산서 미제출 - 계약해지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3가합509352 판결



사안의 개요

- (1) 온라인게임 개발사(라이선서, 원고)와 영상캐릭터 사업자(라이선시, 피고) 사이 온 라인게임의 영상물, 캐릭터 상업화 사업을 위한 라이선스사업계약 체결
- (2) 라이선스 계약기간 2023년까지 약 13년의 장기간
- (3) 라이선시(피고)는 일정한 사용료(매출의 3%)를 분기별로 정산하여 저작권자(라이선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함
- (4) 피고 라이선시 회사 2011년 3/4분기부터 사용료 미지급 및 정산서 미제출 등 채 무불이행

(5) 원고 라이선서 저작권자의 라이선스사업계약 해지 통지

(6) 라이선시 회사(피고) – 회생절차개시결정

쟁점: 라이선스 계약서 계약해지 조항 없음에도 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라이선서의 일방적 계약 해지 인정 여부

[계약해지통보]

3. B는 계약서에 명시되고 양사 사이에 약속된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장기간에 걸쳐 불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점에 대하여 유선, 전자우편 상으로 여러 차례 이행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렇다 할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원 계약의 취지와 양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불가피하게 B와 체결한 원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서면이 B에게 도달하는 시점부터 원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는 바이며, 해지의 원인이 된 사유는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1) 원 계약서 제7조에 따른 원작사용료 정산의무의 불이행 - 계약상 매분기별로 정산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나 2011년 2/4분기 이후 현재까지 1년 4개월간 발생한 매출에 대한 정산서 미제출 및 원작사용료 미지급

(2) 원 계약서 제5조에 따라 B가 D의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제조,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 및 판매홍보자료에 원저작권 표시를 해야 하지만 원저작권이 전혀 표시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일반 대중 및 유관 기업에서 D의 원저작권자를 B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4. 위와 같은 원 계약의 해지에 따라 B의 D 라이선스사업권리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리 - 계속적 계약의 해지 요건 - 신뢰관계 파탄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구체적 사안 판단 – 신뢰관계 파탄 이유로 계속적 계약의 일방적 해지 인정

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 사이에 계속적 계약인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위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은 원고의 2012. 11. 1.자 계약해지통보의 도달로써 해지되어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① 원고가 B에게 2023. 9. 4.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고 B는 원고에게 그 대가로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른바 계속적 계약으로서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의 제반 의무를 계속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 제7조는 "B는 D의 원작사용료로 라이선스사업 개시 후 발생하는 모든 매출의 3%를 원고에게 지불한다(제1항).", "B는 D 라이선스사업 전개에 있어 사업비 회수 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매출의 7%를 원고에게 지급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는 2011년 2/4분기 이후로 원고에게 사용료를 거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사용계약에 있어서 사용료의 지급은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용권자인 B가 불성실하게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원고와 B 사이의 신뢰관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③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사용료의 증명과 처리를 위해 B는 분기별 정산서류를 익월 10일까지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B는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국제계약, 영문계약, 계약분쟁, 손해배상, 민형사소송,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